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장

제11호 2017. 3. 17(금)

고시

- 남원시 고시 제2017 - 31호 남원시 군도 25호선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
-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고시 제2017 - 1호 남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단가 고시 ----- 8

공고

- 남원시 공고 제2017 - 422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 14
- 남원시 공고 제2017 - 427호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5
- 남원시 공고 제2017 - 448호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5
- 남원시 공고 제2017 - 451호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47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17-31호

남원시 군도25호선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남원시 동남원 나들목 연결도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7일

남 원 시 장 인

1.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 치	면 적 (㎡)	기 점	종 점	주 요 통과지	총연장 (km)
신설	군도	25	부절~월석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일원	29,193	산동면 부절리 2285-534답	산동면 부절리 571-3도	-	0.994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지역간의 원활한 물동량 수송과 교통난 해소는 물론 지역간의 균형발전 및 주민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고자 도로구역을 결정하고자 함

3. 사업시행기간 : 2016년 1월 ~ 2017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 침”

5. 도로구역 결정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계재생략”

6.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등), 토지 및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 도로구역 결정 조서 등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 ~ 2017. 3. 31

나. 열람장소 : 남원시청 건설과(☎063-620-6532)

7. 도로구역 결정 조서 : “계제 생략”

8. 도로구역 결정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계제 생략”

□ 세부토지조서

연번	지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합계			29,193	29,193			
1	산동면 부절리	2285-539	잡	463	463.0	최길주	부절리****-1	
2	산동면 부절리	2285-534	답	905	905.0	최길주	부절리****-1	
3	산동면 부절리	2520	구	447.3	75.0	국	농림축산식품부	
4	산동면 부절리	2518	도	5,212.6	2,690.0	국	국토교통부	
5	산동면 부절리	2435-9	답	194.4	194.4	공	남원시	
6	산동면 부절리	2435-10	답	140.5	140.5	최영재 외1인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	
7	산동면 부절리	2435-11	답	1,006.4	1,006.4	공	남원시	
8	산동면 부절리	2435-12	답	1,085.7	1,085.7	공	남원시	
9	산동면 부절리	2435-13	답	322.4	322.4	공	남원시	
10	산동면 부절리	2435-14	답	777.5	775.5	공	남원시	
11	산동면 부절리	2435-15	답	781.2	781.2	공	남원시	
12	산동면 부절리	2435-16	답	776.2	776.2	국	기획재정부	
13	산동면 부절리	2517	구	655.6	120.0	국	농림축산식품부	
14	산동면 부절리	2434-10	답	88.3	88.3	이*재	남원시 산동면 요천상로 ***-15	
15	산동면 부절리	2434-11	답	214.2	214.2	이*재	남원시 산동면 요천상로 ***-15	
16	산동면 부절리	2434-12	답	709.2	709.2	이*재	남원시 산동면 요천상로 ***-15	
17	산동면 부절리	2516	구	2,797.6	546.0	국	농림축산식품부	
18	산동면 부절리	0-75	가		65.0	미등록지		
19	산동면 부절리	2081-2	답	123	123.0	공	남원시	
20	산동면 부절리	2080-6	답	553	553.0	공	남원시	
21	산동면 부절리	2080-5	답	684	684.0	공	남원시	

연번	지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22	산동면 부절리	2078-6	답	248	248.0	국	국토교통부	
23	산동면 부절리	2076-2	임	178	178.0	공	남원시	
24	산동면 부절리	2078-2	답	17	17.0	국	국토교통부	
25	산동면 부절리	2077	답	255	255.0	공	남원시	
26	산동면 부절리	2075-1	답	344	344.0	공	남원시	
27	산동면 부절리	2074-3	답	986	986.0	공	남원시	
28	산동면 부절리	2069-2	답	743	743.0	공	남원시	
29	산동면 부절리	2071	답	259	259.0	공	남원시	
30	산동면 부절리	2070-2	답	300	300.0	공	남원시	
31	산동면 부절리	544-2	답	158	158.0	공	남원시	
32	산동면 부절리	545-2	답	82	82.0	공	남원시	
33	산동면 부절리	546-4	답	201	201.0	공	남원시	
34	산동면 부절리	550-2	답	95	95.0	공	남원시 외 1인	
35	산동면 부절리	2294-5	구	729	65.0	국	농림축산식품부	
36	산동면 부절리	573-3	답	309	309.0	공	남원시	
37	산동면 부절리	573-1	답	215	215.0	공	남원시	
38	산동면 부절리	573-2	답	38	38.0	국	국토교통부	
39	산동면 부절리	575-1	답	134	134.0	공	남원시	
40	산동면 부절리	576-3	전	16	16.0	공	남원시	
41	산동면 부절리	576-6	전	14	14.0	국	국토교통부	
42	산동면 부절리	576-5	전	122	122.0	공	남원시	
43	산동면 부절리	577-4	전	3	3.0	국	국토교통부	
44	산동면 부절리	577-5	답	134	134.0	공	남원시	

연번	지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45	산동면 부절리	577-3	전	138	138.0	공	남원시	
46	산동면 부절리	579-5	답	114	114.0	공	남원시	
47	산동면 부절리	580-8	답	239	239.0	공	남원시	
48	산동면 부절리	580-6	답	169	169.0	공	남원시	
49	산동면 부절리	581-6	답	70	70.0	공	남원시	
50	산동면 부절리	581-8	답	51	51.0	공	남원시	
51	산동면 부절리	581-4	답	75	75.0	공	남원시	
52	산동면 부절리	582-6	답	44	44.0	조*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 *층	
53	산동면 부절리	582-4	답	142	142.0	공	남원시	
54	산동면 부절리	656-7	답	45	45.0	박*순	665-1	
55	산동면 부절리	656-5	답	137	30.0	공	남원시	
56	산동면 부절리	656-2	도	76	42.0	최*현		
57	산동면 부절리	2065-2	도	43	43.0	공	남원시	
58	산동면 부절리	2065-8	답	111	111.0	공	남원시	
59	산동면 부절리	583-4	답	17	17.0	공	남원시	
60	산동면 부절리	583-2	도	20	20.0	공	남원시	
61	산동면 부절리	582-5	답	22	22.0	조*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 *층	
62	산동면 부절리	582-2	도	63	63.0	공	남원시	
63	산동면 부절리	581-2	도	26	26.0	공	남원시	
64	산동면 부절리	581-7	답	46	46.0	공	남원시	
65	산동면 부절리	581-5	도	57	57.0	공	남원시	
66	산동면 부절리	580-9	답	48	48.0	박*순	***	
67	산동면 부절리	580-5	답	6	6.0	공	남원시	

연번	지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68	산동면 부절리	580-2	도	73	73.0	공	남원시	
69	산동면 부절리	579-4	답	2	2.0	공	남원시	
70	산동면 부절리	579-2	도	46	46.0	공	남원시	
71	산동면 부절리	578-6	답	100	100.0	공	남원시	
72	산동면 부절리	578-2	도	30	30.0	공	남원시	
73	산동면 부절리	578-3	도	47	47.0	공	남원시	
74	산동면 부절리	577-1	도	26	26.0	공	남원시	
75	산동면 부절리	578-4	답	1	1.0	공	남원시	
76	산동면 부절리	578-5	도	3	3.0	공	남원시	
77	산동면 부절리	576-1	전	10	10.0	국	국토교통부	
78	산동면 부절리	572-6	전	23	23.0	이*춘	***	
79	산동면 부절리	576-4	도	7	7.0	공	남원시	
80	산동면 부절리	576-2	도	26	26.0	김*백	목동리	
81	산동면 부절리	2328	도	518	103.0	국	국토교통부	
82	산동면 부절리	572-2	도	79	79.0	공	남원시	
83	산동면 부절리	572-3	답	22	22.0	김*	나고야시 외천백촌 7가 평침 ****	
84	산동면 부절리	572-5	답	8	8.0	김*	나고야시 외천백촌 7가 평침 ****	
85	산동면 부절리	572-4	도	3	3.0	김*	나고야시 외천백촌 7가 평침 ****	
86	산동면 부절리	571-2	도	44	44.0	최*직	****	
87	산동면 부절리	571-5	도	13	13.0	최*직	****	
88	산동면 부절리	2294-50	도	170	26.0	국	농림축산식품부	
89	산동면 부절리	550-4	답	19	19.0	공	남원시	
90	산동면 부절리	550-5	답	14	14.0	국	국토교통부	

연번	지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외 1인	
91	산동면 부절리	2285-538	답	353	353.0	최*식	****	
92	산동면 부절리	2285-535	답	2,674	2,674.0	공	남원시	
93	산동면 부절리	2285-482	천	46,185	558.0	국	국토교통부	
94	산동면 부절리	2285-537	답	20	20.0	공	남원시	
95	산동면 부절리	2285-536	전	126	126.0	공	남원시	
96	산동면 부절리	2285-540	전	3	3.0	공	남원시	
97	산동면 부절리	0-73	가		30.0	미등록지		
98	산동면 부절리	2519	구	2,065.9	1,474.0	국	농림축산식품부	
99	산동면 부절리	2294-27	구	78	40.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0	산동면 부절리	2294-28	구	637	256.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1	산동면 부절리	2294-30	구	687	67.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2	산동면 부절리	2110-1	답	367	367.0	공		
103	산동면 부절리	2111-1	답	141	141.0	공		
104	산동면 부절리	2112	답	271	271.0	공		
105	산동면 부절리	2113-3	답	559	559.0	공		
106	산동면 부절리	2116-3	묘	81	81.0	최*동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	
107	산동면 부절리	2294-8	구	1,252	1,006.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8	산동면 부절리	2080-4	답	6	6.0	국	국토교통부	
109	산동면 부절리	540-3	답	281	168.0	공	남원시	
110	산동면 부절리	540-2	도	38	38.0	공	남원시	
111	산동면 부절리	2336-1	도	90	8.0	국	국토교통부	
112	산동면 부절리	371-2	도	149	149.0	최*현	부절리 ***	

연번	지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13	산동면 부절리	371-5	답	72	55.0	공	남원시	
114	산동면 부절리	403-5	임	7	7.0	공	남원시	
115	산동면 부절리	372-2	도	7	7.0	장*식	부절리 ***	
116	산동면 부절리	403-3	도	139	112.0	공	남원시	
117	산동면 부절리	373-1	답	78	72.0	공	남원시	
118	산동면 부절리	373-2	답	14	14.0	박*간	부절리 ***	
119	산동면 부절리	372-4	답	38	38.0	박*순	부절리 ***-1	
120	산동면 부절리	372-3	답	55	55.0	공	남원시	
121	산동면 부절리	371-4	답	469	469.0	공	남원시	
122	산동면 부절리	371-6	답	143	143.0	최*주	부절리 ****-1	
123	산동면 부절리	540-4	답	8	8.0	공	남원시	
124	산동면 부절리	370-3	전	57	57.0	최*주	부절리 ****-1	
125	산동면 부절리	370-1	전	34	34.0	공	남원시	
126	산동면 부절리	540-9	답	150	150.0	공	남원시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고시 제2017 - 1호

남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단가 고시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남원시 상수도 급수공사에 적용(다음 고시일까지)되는 급수공사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0일

남 원 시 장

2017년 남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주요단가

□ 광역상수도 농촌 마을권 급수공사 단가

항 목		Φ13mm	Φ20mm	Φ25mm	Φ32mm	Φ40mm	비 고
합 계		247,500	382,600	543,900	873,700	1,325,600	
시설분담금		96,000	192,000	320,000	576,000	880,000	
수수료	소 계	12,000	12,000	12,000	12,000	24,000	
	설 계	4,000	4,000	4,000	4,000	8,000	
	재료검사	4,000	4,000	4,000	4,000	8,000	
	준공검사	4,000	4,000	4,000	4,000	8,000	
계량기 및 보호통	소 계	139,500	178,600	211,900	285,700	421,600	

□ 개인급수 공사 주요 단가

1. 시설분담금 및 계량기 설치

1) 내충격수도관

(단위 : 개소 / 원)

구 분	시설분담금	계량기 (역지밸브 포함) 및 보호통 설치 (자재대 및 설치비 포함)			
		토 사 구 간	콘크리트포장 (T=15cm)	콘크리트포장 (T=10cm)	콘크리트포장 (T=5cm)
φ13	96,000	279,205	407,154	367,901	325,487
φ20	192,000	352,884	502,348	458,100	411,761
φ25	320,000	388,669	538,133	493,885	447,546
φ32	576,000	469,640	619,104	574,856	528,517
φ40	880,000	672,373	879,023	819,434	759,839
φ50	1,552,000	767,273	973,923	914,334	854,739

2) PE관

(단위 : 개소 / 원)

구 분	시설분담금	계량기 (역지밸브 포함) 및 보호통 설치 (자재대 및 설치비 포함)			
		토 사 구 간	콘크리트포장 (T=15cm)	콘크리트포장 (T=10cm)	콘크리트포장 (T=5cm)
φ13	96,000	273,423	401,372	362,119	319,705
φ20	192,000	345,879	495,343	451,095	404,756
φ25	320,000	380,242	529,706	485,458	439,119
φ32	576,000	455,878	605,342	561,094	514,755
φ40	880,000	656,712	863,362	803,773	744,178
φ50	1,552,000	739,018	945,668	886,079	826,484

3) S.T.S관

(단위 : 개소 / 원)

구 분	시설분담금	계량기 (역지밸브 포함) 및 보호통 설치 (자재대 및 설치비 포함)			
		토 사 구 간	콘크리트포장 (T=15cm)	콘크리트포장 (T=10cm)	콘크리트포장 (T=5cm)
φ13	96,000	283,205	411,154	371,901	329,487
φ20	192,000	355,204	504,668	460,420	414,081
φ25	320,000	394,763	544,227	499,979	453,640
φ32	576,000	477,598	627,062	582,814	536,475
φ40	880,000	684,907	891,557	831,968	772,373
φ50	1,552,000	777,473	984,123	924,534	864,930

2. 분수전 설치

(단위 : 개소 / 원)

구 분	토 사	보도블럭	아스콘 (T=15cm)	아스콘 (T=20cm)	콘크리트 (T=15cm)	콘크리트 (T=20cm)
φ16	144,856	147,378	209,503	213,391	258,575	294,381
φ20	154,787	157,309	219,434	223,322	268,506	304,312
φ25	183,892	186,414	248,539	252,427	297,611	333,417
φ30	216,414	218,936	281,061	284,949	330,133	365,939
φ40	252,603	255,125	317,250	321,138	366,322	402,128
φ50	276,580	279,102	341,227	345,115	390,299	426,105

3. T분기 설치

1) 내충격수도관

(단위 : 개소 / 원)

구 분	토 사	보도블럭	아스콘 (T=15cm)	아스콘 (T=20cm)	콘크리트 (T=15cm)	콘크리트 (T=20cm)
φ16	49,604	52,126	114,251	118,139	163,323	199,129
φ20	53,760	56,282	118,407	122,295	167,479	203,285
φ25	56,636	59,158	121,283	125,171	170,355	206,161
φ30	62,285	64,807	126,932	130,820	176,004	211,810
φ40	65,886	68,408	130,533	134,421	179,605	215,411
φ50	73,470	75,992	138,117	142,005	187,189	222,995
φ75	155,761	158,283	220,408	224,296	269,480	305,286
φ20 * 16	52,384	54,906	117,031	120,919	166,103	201,909
φ25 * 16	55,278	57,800	119,925	123,813	168,997	204,803
φ30 * 20	60,988	63,510	125,635	129,523	174,707	210,513
φ40 * 25	64,657	67,179	129,304	133,192	178,376	214,182
φ50 * 16	69,733	72,255	134,380	138,268	183,452	219,258
φ50 * 25	70,823	73,345	135,470	139,358	184,542	220,348
φ75 * 50	146,016	148,538	210,663	214,551	259,735	295,541

2) PE 급수관

(단위 : 개소 / 원)

구 분	토 사	보도블럭	아스콘 (T=15cm)	아스콘 (T=20cm)	콘크리트 (T=15cm)	콘크리트 (T=20cm)
φ16	38,037	40,559	102,684	106,572	151,756	187,562
φ20	39,133	41,655	103,780	107,668	152,852	188,658
φ25	40,970	43,492	105,617	109,505	154,689	190,495
φ32	44,412	46,934	109,059	112,947	158,131	193,937
φ40	48,100	50,622	112,747	116,635	161,819	197,625
φ50	51,376	53,898	116,023	119,911	165,095	200,901
φ20 * 16	40,268	42,790	104,915	108,803	153,987	189,793
φ25 * 16	43,781	46,303	108,428	112,316	157,500	193,306
φ30 * 20	45,776	48,298	110,423	114,311	159,495	195,301
φ40 * 25	49,046	51,568	113,693	117,581	162,765	198,571
φ50 * 16	53,115	55,637	117,762	121,650	166,834	202,640
φ50 * 25	53,115	55,637	117,762	121,650	166,834	202,640

3) S.T.S 급수관

(단위 : 개소 / 원)

구 분	토 사	보도블럭	아스콘 (T=15cm)	아스콘 (T=20cm)	콘크리트 (T=15cm)	콘크리트 (T=20cm)
φ16	44,882	47,404	109,529	113,417	158,601	194,407
φ20	47,642	50,164	112,289	116,177	161,361	197,167
φ25	52,495	55,017	117,142	121,030	166,214	202,020
φ32	61,575	64,097	126,222	130,110	175,294	211,100
φ40	70,266	72,788	134,913	138,801	183,985	219,791
φ50	79,815	82,337	144,462	148,350	193,534	229,340
φ20 * 16	54,957	57,479	119,604	123,492	168,676	204,482
φ25 * 16	56,710	59,232	121,357	125,245	170,429	206,235
φ30 * 20	69,123	71,645	133,770	137,658	182,842	218,648
φ40 * 25	78,851	81,373	143,498	147,386	192,570	228,376
φ50 * 16	84,159	86,681	148,806	152,694	197,878	233,684
φ50 * 25	86,401	88,923	151,048	154,936	200,120	235,926

4. 직관부설

1) 내충격수도관

(단위 : m / 원)

구 분	토 사	보도블럭	아스콘 (T=15cm)	아스콘 (T=20cm)	콘크리트 (T=5cm)	콘크리트 (T=10m)	콘크리트 (T=15cm)	콘크리트 (T=20cm)
φ16	15,649	17,471	44,827	47,669	31,881	62,272	70,802	88,083
φ20	15,985	17,807	45,163	48,005	32,217	62,608	71,138	88,419
φ25	17,188	19,010	46,366	49,208	33,420	63,811	72,341	89,622
φ32	18,268	20,090	47,446	50,288	34,500	64,891	73,421	90,702
φ40	19,536	21,358	48,714	51,556	35,768	66,159	74,689	91,970
φ50	21,538	23,360	50,716	53,558	37,770	68,161	76,691	93,972
φ75	28,009	29,831	57,187	60,029	44,241	74,632	83,162	100,443

2) PE 급수관

(단위 : m / 원)

구 분	토 사	보도블럭	아스콘 (T=15cm)	아스콘 (T=20cm)	콘크리트 (T=5cm)	콘크리트 (T=10m)	콘크리트 (T=15cm)	콘크리트 (T=20cm)
φ16	13,750	15,572	42,928	45,770	29,982	60,373	68,903	86,184
φ20	14,018	15,840	43,196	46,038	30,250	60,641	69,171	86,452
φ25	14,755	16,577	43,933	46,775	30,987	61,378	69,908	87,189
φ32	15,447	17,269	44,625	47,467	31,679	62,070	70,600	87,881
φ40	16,920	18,742	46,098	48,940	33,152	63,543	72,073	89,354
φ50	18,732	20,554	47,910	50,752	34,964	65,355	73,885	91,166

3) S.T.S 급수관

(단위 : m / 원)

구 분	토 사	보도블럭	아스콘 (T=15cm)	아스콘 (T=20cm)	콘크리트 (T=5cm)	콘크리트 (T=10m)	콘크리트 (T=15cm)	콘크리트 (T=20cm)
φ16	26,456	28,278	55,634	58,476	42,688	73,079	81,609	98,890
φ20	28,624	30,446	57,802	60,644	44,856	75,247	83,777	101,058
φ25	31,819	33,641	60,997	63,839	48,051	78,442	86,972	104,253
φ32	38,894	40,716	68,072	70,914	55,126	85,517	94,047	111,328
φ40	45,036	46,858	74,214	77,056	61,268	91,659	100,189	117,470
φ50	51,573	53,395	80,751	83,593	67,805	98,196	106,726	124,007

5. 부분시설물 설치

(단위 : 개소 / 원)

구 분		지수전	T설치	조인트	엘보설치	이 경 시 설 물		
관종	구경					구 경	이경T	레듀샤
내충격 수도관	φ16	107,524	17,641	12,118	13,418	φ20 * 16	20,421	13,663
	φ20	112,789	21,797	14,811	16,394	φ25 * 16	23,315	15,609
	φ25	122,883	24,673	17,138	18,799	φ30 * 20	29,025	19,139
	φ30	141,960	30,322	20,318	22,786	φ40 * 25	32,694	22,189
	φ40	158,195	33,923	23,392	26,816	φ50 * 16	37,770	24,950
	φ50	186,929	41,507	28,729	33,430	φ50 * 25	38,860	26,403
S.T.S	φ16	107,529	12,919	9,915	10,080	φ20 * 16	22,994	11,800
	φ20	112,050	15,679	10,992	11,543	φ25 * 16	24,747	15,427
	φ25	122,752	20,532	13,430	14,028	φ30 * 20	37,160	23,968
	φ30	141,677	29,612	20,660	22,731	φ40 * 25	46,888	33,515
	φ40	157,699	38,303	26,815	29,067	φ50 * 16	52,196	35,559
	φ50	242,541	47,852	33,582	35,417	φ50 * 25	54,438	36,897
PE	φ16	107,410	6,074	4,044	3,858	φ20 * 16	8,305	4,648
	φ20	113,678	7,170	4,924	4,824	φ25 * 16	11,818	9,266
	φ25	123,405	9,007	6,208	7,725	φ30 * 20	13,813	11,079
	φ30	145,224	12,449	8,202	9,542	φ40 * 25	17,083	20,395
	φ40	161,069	16,137	10,664	12,315	φ50 * 16	21,152	22,635
	φ50	189,793	19,413	12,573	14,993	φ50 * 25	21,152	22,635

6. 기타시설

1)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단위 : 원)

규 격	단 위	금 액	비 고
T=15cm	개소당	26,133	
T=20cm	개소당	42,218	
T=30cm	개소당	84,437	
T=40cm	개소당	104,541	

2) 급수자재 운반

- 남원시내 공통 : 21,654원(운반거리 3km이내)
- 읍면지역 공통 : 41,565원(운반거리 10km이상)

3) 도로교통 안전관리비

- 신호수 2명 (현장여건에 따라 소요인력은 증감 할 수 있음)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9. 8.>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공고 제 2017-422 호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7년도 소하천 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남 원 시 장 (직인)

소하천명	사 업 개 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 업 량 (m)		공사 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築堤) 및 호안(護岸)	기타	착공	준공		
고평천	고평 소하천 정비사업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976	남원시 수지면 고평리 1337	좌안 2,240m 우안 2,075m	교량 4개소 취입보 6개소 등	2017. 4.	2019. 11.	주민생활 안정도모	편입토지 손실보상 등은 별도 보임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210mm×297mm [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남원시 공고 제2017-427호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3.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건 축 과 장

1. 개정이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심의규정 삭제 및 건축심의 받은 사항의 유효기간 조정 (안 제7조, 안 제9조)
- 나. 건축사의 설계제외 건축 대상을 조정 (안 제18조의2)
- 다.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대한 기준 신설 (안 제19조의2)
- 라. 건축물의 유지·관리 수시점검 대상을 조정 (안 제28조)
- 마.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완화 규정 삭제 (안 제34조)
- 바. 공개공지의 확보 대상을 조정 (안 제36조)
- 사.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완화 (안 제40조)
- 아.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조항 및 감경 기준을 신설 (안 제41조, 안 제42조)
- 자. 가설건축물 기준 및 대상을 조정 (안 별표 3)
- 차.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및 대상을 조정 (안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3. 14. ~ 2017. 4. 3.(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9조 제5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6조의3제2항”을 “영 제6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영 제11조제2항제3호”를 “영 제11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18조의2제8호 중 “2011년 6월 30일”을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을 “간이 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온실”을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을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 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을 “야외 전시시설 및 촬영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야외 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건축물의 공사감리) 법 제25조제12항에 따른 감리비용의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감리비용의 기준에 50퍼센트를 적용하고, 파이프구조로 된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감리비용의 기준에 25퍼센트를 적용한다.

제24조제4항 중 “영 제15조제5항제15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6호”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을 “위하여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86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서”를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제4항 중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을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총 3회 이내로 한다.

제4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41조 및 제4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4.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 건축물에 시정명령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로 한다.

제42조(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기초 및 골조만 완료 되었을 경우
2.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마을회관, 노인정 등 주민 공동소유 및 이용시설

②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별표 3,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사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제24조 관련)

용도	구조	면적	허용지역	기타
주차장	철골조집식	제한없음	미관지구는 불가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화원	철골조집식	100제곱미터 이하	미관지구는 불가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철골조집식 또는 컨테이너	30제곱미터 이하	미관지구는 불가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기계보호시설	철골조집식	300제곱미터 이하	미관지구는 불가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제한없음 (대량,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가 아닐 것)	제한없음	제한없음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 한 기존 재래시장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 시장의 공지 또는 도호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소화활동·소방차 진입 등 「소방 관련법」 및 「도로법」 그 밖 의 관련법에 저촉사항 없는 것)
창고용, 같이포장용, 같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시설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	제한없음	공장부지내	천막형태가 아닌 일정 내구성을 갖춘 구조 허용(「건축법」 및 「소방관련법」 등 그 밖의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

※ 공통사항

- 1) 옥상부분에는 설치 불가(단, 공장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
- 2) 면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함
- 3) 존치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이 존치기간을 연장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별표 4]

대지 안의 공지기준(제31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 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에 한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3미터 이상 ▪ 연립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바. 그 밖에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미터 이상(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용도 및 지역 내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의 범위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 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일반 숙박시설에 한정함).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다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3미터 이상 ▪ 연립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바. 그 밖에 모든 건축물. 다만 맞벽건축물은 제외한다.	▪ 0.5미터 이상(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

비고

-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은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 3)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건축심의대상 및 심의요건 제한)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생 략)</p> <p><u>1의2. 영 제5조의5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안의 신축·증축·개축·재축(단, 증축·개축·재축은 전면부 또는 수직 건축을 제외한 것은 연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상에 한정한다)과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대수선(단, 외부형태 변경면적 85제곱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u></p> <p>2.·3. (생 략)</p> <p>② (생 략)</p> <p>③ ~ ⑤ (생 략)</p> <p>⑥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사항의 유효기간은 심의결정 통보 일부터 <u>1년</u>으로 한다.</p> <p>제9조(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 ④ (생 략)</p> <p>⑤ 위원회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소위원회가 심의한다.</p>	<p>제7조(건축심의대상 및 심의요건 제한) ① ----- -----.</p> <p>1.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2.·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u>2년</u>-----.</p> <p>제9조(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p>

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의 설계 없이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 1. ~ 7. (생략)
-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 9. (생략)
-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 12.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

-----.

- 1. ~ 7. (현행과 같음)
- 8. -----

--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
- 9. (현행과 같음)
- 10. -----
- 간이 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
- 11. -----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

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
에 이와 비슷한 것

13. (생략)

14. 「관광진흥법」 제2조제11
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
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생략)

<신설>

<신설>

제24조(가설건축물) ① ~ ③ (생략)

④ 영 제15조제5항제15호의 “건

이수선 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
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
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
한다)-----

13. (현행과 같음)

14. 야외 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현행과 같음)

16. 야외 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
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
곱미터 이하인 것

제19조의2(건축물의 공사감리) 법
제25조제12항에 따른 감리비용
의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
의3제2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감리
비용의 기준에 50퍼센트를 적용
하고, 파이프구조로 된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감리비용의 기
준에 25퍼센트를 적용한다.

제24조(가설건축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제34조(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완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 도로에 대한 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는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미터 이내의 부분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생략)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삭 제>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한다.

⑤·⑥ (생략)

제36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의료시설

2. 운동시설

3. 위락시설

4. (생략)

② ~ ⑤ (생략)

제40조(이행강제금) ① (생략)

③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⑤·⑥ (현행과 같음)

제36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

1.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삭제>

<삭제>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른 법 제80조제1항 단서 부분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총 3회 이내로 한다.

③ (생략)

<신설>

<신설>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총 3회 이내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41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 3.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 4.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신 설>

위반 건축물에 시정명령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로 한다.

제42조(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축물의 기초 및 골조만 완료 되었을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 3. 마을회관, 노인정 등 주민 공동소유 및 이용시설

②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17-448호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3.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재 정 과 장

1. 개정 이유

「지방재정법」의 분법으로 제정된 「지방회계법」의 시행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반영하여 금고의 지정 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지방재정법」 분법으로 관련 조항 개정 (안 제1조)
- 나. 금고 약정서 성립 요건 개정 (안 제2조)
 - “기명날인”을 →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변경
- 다. 금고 지정의 방법 개정 (안 제3조)
 - 일반회계는 단일 금고로 지정, 일반회계 포함한 총 금고의 수를 2개로 제한함.
- 라.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3. 17. ~ 2017. 4. 6. (20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취급하게 하기”를 “취급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명날인”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한다.

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일반회계는 단일 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제2항 중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을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으로 한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남원시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 ----- 뜻은 ----- -----.</p>
<p>1.“금고”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u>취급하게 하기</u>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p>	<p>1.----- ----- ----- ----- ----- ----- ----- <u>취급</u> ----- ----- ----- ----- ----- ----- ----- ----- -----</p>

하“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생략)

3. · 4. · 5. (생략)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7. · 8. (생략)

제3조(금고지정 방법) ① · ② (생략)

③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은 1금고(단일금고)로 지정한다. 다만, 특별회계 ·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생략)

제8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생략)

② 시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

-----.

2. (현행과 같음)

3. · 4. · 5. (현행과 같음)

6.-----

-----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

7. · 8. (현행과 같음)

제3조(금고지정 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일반회계는 단일 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

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
 - 필요한-----
 -----.

[별표 1]

남원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4조제3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31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10)	
	- 국외 평가기관	6	
	- 국내 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1)	
	- 총자본비율 (안정성)	7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6		
- 대손충당금적립률 (건전성)	1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소 계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시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19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4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7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소 계	23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소 계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4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 (제4조제3항 관련)

1.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 하고, 필요시 평가 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 예시(국외평가기관) - 1순위 6.0점, 2순위 5.4점, 최저순위 3.6점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는 순위 간 점수 편차를 배점 한도의 5퍼센트의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 예시(정기예금) - 1순위 6.0점, 2순위 5.7점, 최저순위 3.6점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공인된 국내(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등)·국외(S&P, Moody's, Fitch) 등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 평가 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배점

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을 평가

2)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① 총자본비율 (안정성)
 -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
 - ②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③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 ④ 대손충당금적립률 (건전성)

나.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 정기예금 예치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공공예금 적용금리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순위에 따라 배점

3) 시 대출금리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 입출금식 예금의 금리 수준에 따라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1)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도내 영업망 및 관내 지점의 수(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 최근 3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가상계좌 등) 증진 방안, 납세자 편의성 제고 방안(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은행 이용, 지방세 납입을 위한 타 은행 이용자 수수료 혜택) 과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금고업무 관리 능력

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 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Cash-flow)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금고업무 수행 조직 및 인사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금고관련 세입 세출의 자금관리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인증 등 관리 시스템 구축, 지방세 수납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사회, 경제, 교육, 복지, 문화, 예술 등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시와의 협력사업

-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금고 약정기간 동안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금액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남원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고 제2017-451호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4.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원예허브과장

1. 개정이유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지리산 대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인 지리산허브밸리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허브밸리의 위치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안 제3조)
- 나. 허브밸리의 관리 및 운영사항을 정함 (안 제4조~안 제17조)
 - 개장, 관람시간, 입장료, 주차장, 시설이용 등
- 다. 허브밸리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8조~안 제26조)
 - 수탁자선정, 위탁기간, 협약체결, 운영지원, 지도·감독 등
- 라. 남원시 허브밸리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7조~안 제35조)
 -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없음
- 나. 입법예고
 - 기 간 : 2017. 3. . ~ 2017. 4. . (20일간)
 - 결 과 :
- 다. 비용추계서 : 별첨
-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 관광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지리산허브밸리(이하 “허브밸리”라 한다)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운봉읍 바래봉길 211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브밸리”란 지리산 바래봉 인근에 지리산 자생식물과 각종 허브를 이용하여 조성한 공원을 말한다.
2. “시설이용”이란 관람구역 입장·주차장 내 주차·체험시설이용 이외의 다른 사항으로 허브밸리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3. “시설이용료”란 제2호의 시설이용 행위를 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장 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허브밸리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② 허브밸리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허브밸리 관련 축제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휴장하지 않는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제외) 및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의 다음날

2.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임시 휴장할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허브밸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장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부 지역에 대해 진입 또는 접근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홈페이지 또는 시설입구 등에 그 사유를 적어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시간) ① 허브밸리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 : 09:00 ~ 18:00

2. 11월 ~ 2월 : 09:00 ~ 17:00

② 입장시간은 관람시간의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6조(입장료 등) ① 시장은 허브밸리의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려는 사람(이하 “관람객”이라 한다)에게는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 환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허브밸리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입장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원칙으로 하되, 전산발매체계를 활용한 매표일 경우에는 형식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점검 등의 기간 중에는 다른 형식의 입장권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입장료·각종 시설이용자 준수사항 등은 일반시민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객 준수사항) ① 시장은 관람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지물품 보관, 퇴장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음주 및 취사 행위, 환경오염 행위
3. 관람객을 상대로 판매·구걸·행상 행위
4.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행위
5. 그 밖에 제한이 필요한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한 물품은 소지자가 퇴장할 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제8조(주차료 징수) ① 허브밸리 주차장 이용자에게는 별표 4에 따라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료 감면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허브밸리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차료 산정을 위한 시간은 주차장 입차 때와 출차 때에 차량번호 인식카메라에 촬영된 시각의 시간으로 한다.

③ 시설물의 점검 등의 기간 중에는 다른 형식의 주차권과 정산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등) ①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 내의 안내표지 및 주차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하며, 자동차 관리 및 물품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출차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행위
2.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주차장 내의 각종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10조(주차장 이용 관련 손해배상) ①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과 타 차량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이 배상하여야 하며, 주차장 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이용 신청 절차 등) ① 시설이용 신청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서 또는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이용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이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허가 여부를 접수일 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용일 1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이용 신청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문화행사, 공연, 전시 행사
3. 관내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의 행사

제12조(시설이용료) ①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려는 신청자에게 별표 6과 같이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이용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사람에게는 3일 이내(주말·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이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이용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관리·운영에 부적합하거나 긴급한 보수가 필요할 경우

② 시장은 시설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4조(시설이용자의 구조변경) 시설이용자가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이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구조변경은 이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시장은 시설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액은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권리양도 금지) 시설이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7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허브밸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 등의 판매점
2. 식당, 매점, 간이휴게실 등 편의시설
3.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3장 위탁 운영

제18조(위탁) ① 시장은 허브밸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허브밸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허브밸리를 수탁 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선정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에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수탁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수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위·수탁자와 그 관련 사항
2. 위·수탁 기간 및 시설
3. 수탁자의 권리·의무와 준수사항
4. 협약 위반 시 조치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원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자의 권리·의무 및 행위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재산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 법령과 조례·규칙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2. 수탁사무의 처리 및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할 의무

3. 허브밸리를 수탁함에 있어 각종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

4. 수탁시설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보수 의무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3. 수탁 권한의 양도나 대여 행위

4.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23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허브밸리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 받으려면 수탁자는 시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허브밸리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후에 수탁자의 변경이 있으면 새로운 계약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민·형사상 책임 등) ① 수탁자의 의무소홀 또는 제3자로 인한 시설물 등과 재산의 파손·분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허브밸리를 수탁함에 있어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시장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

다.

제2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 성실한 조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을 상주(常住)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3항의 평가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의무 및 행위제한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기능을 못한 경우
3. 그 밖의 공익상 이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장 남원시 허브밸리 운영위원회

제2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허브밸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허브밸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허브밸리의 관리·운영,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허브밸리 수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등

제2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 국장과 과장, 관광 업무담당 과장, 운봉읍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허브·식물·조경 관련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광·경영·회계 관련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0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3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자이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3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또는 품의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허브밸리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할 경우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2.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제35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허브밸리 아로마테라피관·숙박시설 민자유치 및 허브복합토피아관 민간위탁관리 민간투자자 모집공고」에 따라 선 정된 수탁자와 그에 따른 위·수탁 사항은 종전의 조례에 따르며, 연장 및 재계약 시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별표 1]

입 장 료 (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개인	단체	비 고
어 른	6,000원	4,000원	○ 개인 -어 른 : 아래의 개인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만 19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인 사람 -청소년 : 만 13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까지의 사람과 중·고등학생 -군 인 : 부사관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으로서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어르신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어린이 : 만 2세 이상부터 만 13세 미만까지의 사람과 초등학생 -영 아 : 보호자를 동반한 만 2세 미만까지의 사람 ○ 단체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에 한정함(인솔자는 무료)
청소년 군 인	4,000원	3,000원	
어르신 어린이	2,000원	1,500원	
영 아	무 료		

[별표 2]

입장료 감면기준 (제6조제1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또는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하는 사람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만 2세 이상부터 만 13세 미만까지의 사람과 초등학생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공무수행 및 국가 또는 시가 주관·주최·후원하는 행사 참석을 위한 입장객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주민등록등(초)본 소지자에 한정한다)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원시의 다른 관광지와 연계 협약을 체결한 경우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한다)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역 관광지와 연계 협약을 체결한 경우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한다)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사 등 기업체와 제휴를 맺은 경우 	10%

※ 비고

1. 감면대상자의 감면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100% 감면대상자도 반드시 무료입장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3. 둘 이상의 감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요율이 높은 것으로 하나만을 적용한다.

[별표 3]

입장료 환불기준 (제6조제1항 관련)

환 불 대 상	환 불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의 귀책사유로 관람할 수 없을 경우 ○ 입장하기 전에 구매자의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입장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100%

[별표 4]

주 차 료 (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미만) 화물자동차(총중량 2.5톤 미만)	그 밖의 자동차
입차 후 5시간 이내로서 - 최초 20분 이내 - 기본 : 최초 20분 초과 50분 이내 - 추가 : 매 10분 이내	무 료 1,000원 200원 추가	무 료 2,000원 400원 추가
5시간 초과 ~ 24시간 이내	6,000원	12,000원

※ 상기 요금은 입차 시간 기준이며 24시간마다 상기 요금을 반복 적용한다.

[별표 5]

주차료 감면기준 (제8조제1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차량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공용) 차량 3. 언론기관 차량 중 취재 차량 4.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5.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에 기재된 사람)이 운전 또는 동승하는 차량 6.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가 운전 또는 동승한 차량 7. 그 밖에 행사 또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거나 인식표를 부착하고 출입하는 차량	100%
1. 출차 당일에 해당하는 허브밸리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차량 3. 저공해 자동차(「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4.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단, 개소당 2시간 이내에 한정한다)	50%

※ 비고

1. 감면대상자의 감면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둘 이상의 감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요율이 높은 것으로 하나만을 적용한다.

[별표 6]

시설이용료 (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사용기준	금액	비 고
원형광장 무대	1시간당	30,000원	1. 개장시간 내에 한정함 2. 전기시설 이용요금 포함
소공연장 무대	1시간당	10,000원	1. 개장시간 내에 한정함 2. 전기시설 이용요금 포함

[별표 7]

시설이용료 환불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위약 및 배상, 환불 기준	
시설이용 신청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예약 취소	이용일 5일 전 취소	이용료 전액 환불
	이용일 2 ~ 4일 전 취소	이용료의 10% 공제 후 나머지 금액 환불
	이용일 1일 전 취소	이용료의 20% 공제 후 나머지 금액 환불
	이용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이용료의 30% 공제 후 나머지 금액 환불
시장의 귀책사유에 따른 예약 취소	이용일 5일 전 취소	이용료 전액 환불
	이용일 2 ~ 4일 전 취소	이용료 전액 환불과 10% 배상
	이용일 1일 전 취소	이용료 전액 환불과 20% 배상
	이용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이용료 전액 환불과 30% 배상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불	

[별지 제1호 서식]

입 장 권 (제6조제2항 관련)

(앞 면)

<p>일련번호 A D M I S S I O N T I C K E T 입 장 권 (영수증)</p> <p><u>지리산허브밸리</u></p>	<p>『지리산허브밸리 사진』</p>	<p>일련번호 A D M I S S I O N T I C K E T 입 장 권 (수 표)</p>
<p>남 원 시 장 (직 인)</p>		

(뒷 면)

<p>『지리산허브밸리 CI』</p> <p><u>지리산허브밸리</u></p>	<p>『지리산허브밸리 안내도』</p> <p>※ 본 입장권의 효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일 허브밸리 입장에 한정 2. 당일 입장권에 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브밸리 주차장 이용시에 주차료 100분의 50 감액 - 협약 체결된 시 다른 관광지 이용 시 입장료 100분의 40 감액 - 협약 체결된 타 지역 관광지 이용시 입장료 100분의 20 감액 <p>남원시청 원예허브과 (55717) 전북 남원시 운봉읍 바래봉길 209 Tel 063-620-6378 FAX 063-620-6745</p>	
---	--	--

[별지 제2호 서식]

지리산허브밸리 시설이용(변경)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법인·단체 명과 그 대 표자명)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이동전화)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단체번 호)	
사용내역 (변경내역)	이용시설 (변경시설)			
	이용일시 (변경일시)			
	이용목적			
그 밖의 시설 등				
<p>「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리산허브밸리 시설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주소(법인·단체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p> <p>남원시장 귀하</p>				

[별지 제3호 서식]

지리산허브밸리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법인·단체명 과 그 대표자 명)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이동전화)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단체번호)	
시 설 명				
<p>「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리산허브밸리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주소(법인·단체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p> <p>남원시장 귀하</p>				
붙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지리산허브밸리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단체번호)	
시 설 명				
기 간	당 초	~	연 장	~
사 유				
<p>「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리산허브밸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주소(법인·단체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p> <p>남원시장 귀하</p>				
붙임서류	관리·운영 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 부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